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은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307

발의연월일: 2022. 1. 7.

발 의 자:이은주·양정숙·류호정

배진교 • 김홍걸 • 박용진

임호선 · 심상정 · 이수진(비)

강은미 · 장혜영 · 강득구

윤미향 • 기동민 • 김원이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근로 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.

하지만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준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교육훈련을 받는 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4조).

법률 제 호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전단 중 "「근로기준법」 제54조, 제65조, 제72조 및 제73조를"을 "「근로기준법」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54조, 제65조, 제72조, 제73조, 제76조의2, 제76조의3 및 제77조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「근로기준법」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5 4조, 제65조, 제72조, 제73조, 제76조의2, 제76조의3 및 제77조의 위 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, 제109조제1항, 제110 조제1호,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제24조(「근로기준법」의 준용 제24조(「근로기준법」의 준용 등)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등) ① -----현장실습에 대해서는 「근로기 준법 _ 제54조, 제65조, 제72조 장"으로, "근로"는 "현장실습" 으로, "근로자"는 "직업교육훈 련생"으로 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「근로기준법」 제54조, 제65 조,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,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.

개 정 아

-----「근로기 준법 _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5 및 제7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4조, 제65조, 제72조, 제73조, 제 "사용자"는 "현장실습산업체의 76조의2, 제76조의3 및 제77조

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「근로기준법」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54조, 제65조, 제72조, 제73조, 제76조의2, 제76조의3 및 제77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 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, 제109조제1항, 제110조제1호, 제 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.